

청강문화콘텐츠아카데미 시설물 사용규정

제정 2010. 1. 1.

개정 2012. 3. 1.

개정 2021. 11. 15.

개정 2023. 06. 05.

제1조(목적) 청강문화콘텐츠아카데미(이하 “센터”)는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용도로 건립된 건물로서 이 규정은 시설물 사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센터 시설물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 및 협력사 위탁교육 용도로 사용한다.

제3조(범위) 센터 시설물 중 사용 가능한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① 강의실 및 실습실
- ② 숙소
- ③ 세미나실

제4조(주관부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및 협력사 위탁교육 목적으로 사용 시 센터에서 주관한다.

제5조(신청 및 허가) 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 이외의 목적으로 센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별지 서식 2호)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준수) 센터 시설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용 승인 목적이외의 사용금지
- ② 사용기간 및 시간 준수
- ③ 안전 및 질서유지
- ④ 기타 우리대학 및 센터에서 지시한 사항

제7조(사용제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① 센터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에 반하는 경우
- ②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시설물 사용수칙을 위반하거나 고의,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④ 관리자의 정당한 통제 및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 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 설비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 중 발생한 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센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참가생의 교육비는 과정별 특성에 맞추어 센터에서 결정한다.

② 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외의 시설사용료는 센터 시설사용료(별지 서식 1호)에 의하여 책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23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호)

시설 사용료

(단위: 원 / VAT 별도)

| 기준 | 장소 | 시간 | 요금(원) | 비고 |
|-------|--------|-------|---------|-----|
| 시설사용료 | 강의실 | 1일 | 400,000 | |
| | 숙소(일반) | 1일/1실 | 50,000 | 2인실 |
| | 숙소(명상) | 1/일1실 | 60,000 | 1인실 |
| | 세미나실 | 1일 | 200,000 | |

※ 사용기준

1. 숙소 1일 숙박 기준(당일 15:00 - 익일 10:00)
2. 초과비용 : 해당 시설물의 1일 사용 기준금액을 8시간으로 나누어 초과한 시간만큼 초과 징수함
3.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사용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별지 서식 제2호)

시설물 사용 신청서

| | | | | | | | |
|-------------|----------------|----------|----------------|------------|--------|--|--|
| 회사명 | | | | 부서명 | | | |
| 회사주소 | | | | | | | |
| 신청인 | 성명 | | | | 전화 | | |
| | H.P | | | | FAX | | |
| | E-mail | | | | | | |
| 사용시설 | 강의실() | | | | | | |
| | 숙소() | | | | | | |
| | 세미나실() | | | | | | |
| 사용목적 | | | | | | | |
| 사용시간 | 0000.00.00.() | 09:00 부터 | 0000.00.00.() | 10:00 까지 | (박 일) | | |
| 사용인원 | 남자 | 명 | | 여자 | 명 | | |

신청인은 귀 대학교의 "청강문화콘텐츠아카데미 시설물 사용규정"상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0000. 00. 00.

신청인 : (인)

부서장 : (인)

청강문화콘텐츠아카데미 센터장 귀하